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매년 수립 및 국회 보고 등〉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63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7인
2. 발 의 일 : 2025. 2. 11.
3. 회 부 일 : 2025.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제13조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 매년 수립 및 국회 보고(안 제6조)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통일교육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 ④ (생략) <u><신설></u>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u>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u>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 현행법 제6조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작성한 기본계획의 국회보고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행법 제정(1999년¹⁾) 이래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2019년부터는 3년 단위로 수립주기가 변경되었고, 2023년부터는 다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환원된

1)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제5752호, 1999. 2. 5. 제정, 1999. 8. 6. 시행)

것으로 파악되는 바, 그 동안 기본계획이 일관성 있는 주기로 수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면서 작성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관하여 국민 및 관계 행정기관²⁾의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아울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직접 확인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보고서 제출대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수립된 기본계획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입법례〉

구분	규정내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u>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u>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u>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u>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 한편,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는 김기현의원안³⁾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심사 중인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5530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 ----- -----5년마다 수립한다.

2. 연차보고서 매년 작성 및 국회 제출(안 제13조 신설)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통일교육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연차보고서)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기본계획에 따른 통일교육 추진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 따른 통일교육 추진실적이나 성과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한 국회의 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통일교육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 교육으로, 그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에 따른 통일교육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국회가 통일교육 정책의 실적과 성과를 직접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의견을 제시하거나,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통일교육 정책을 보완·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봄.

□ 다만,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따른 통일교육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보고서 제출대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김기현의원안⁵⁾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심사 중인바,

김기현의원안 제6조제2항제12호(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5530호)

현행	개정안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신설></u>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u> 13.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포함)과 홍기원의원안 제6조제5항(수립한 기본계획 3월말까지 국회 보고)이 통합·조정된 대안이 마련될 경우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개정안의 입법 취지(직전 기본계획에 따른 통일교육 추진성과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가 일정 부분 달성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김기현 의원안처럼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면 안 제13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68